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5-159
--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: 2025. 11. .

제 출 자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」의 개정에 따라
소속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 및 경조사 휴가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육아시간 사용일의 시간외근무 허용(안 제24조제14항)
- 나.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(안 별표 3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, 「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」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다. 합의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타사항
 - 1) 입법예고: 2025. 10. 10.~10. 30. (제출된 의견 없음)
 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 결과: 원안 동의
 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 - 4)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: 개선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14항 단서 중 “**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**”을 “**모성보호시간**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24조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29일부터 적용하고,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11일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3]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

(제24조제1항 관련)

구 분	대 상	일수
결 혼	본인	5
	자녀	1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
출 산	배우자	20 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)
사 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· 외조부모	3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입 양	본인	20

* 비고 : 입양은 「입양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,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 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[별표 3]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

(제24조제1항 관련)

구 분	대 상	일수
결 혼	본인	5
	자녀	1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
출 산	배우자	10 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)
사 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3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입 양	본인	20

〔별표 3〕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

(제24조제1항 관련)

구 분	대 상	일수
결 혼	본인	5
	자녀	1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	1
출 산	배우자	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)
사 망	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	5
	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	3
	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3
	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	1
임 앙	본인	20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

3. 미첨부 사유

-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조아라
연락처	02-3153-8215